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 UNCITRAL 제32차 본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 강 빈*

〈목 차〉

| | |
|-----------|---------------|
| I. 머리말 | V. 중재인 |
| II. 조정절차 | VI. 중재판정 |
| III. 중재계약 | VII. 중재판정의 집행 |
| IV. 중재절차 | VIII. 맺음말 |

I. 머리말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은 제31차 본회의 기간중인 1998년 6월 10일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 1958년 6월 10일)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협약 특별기념일 행사를 뉴욕에서 개최하였는 바, 이 기념회의에서 선도적인 중재전문가들은 뉴욕협약의 이행촉진, 그의 법률제정 및 적용과 같은 문제에 관한 보고서들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뉴욕협약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적 법

* 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규정과 실무상으로 겪고 있으나 중재에 관한 현존 법률규정이나 비법률규정에서 다루고 있지않는 실무상 어려운 문제들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뉴욕협약 자체 이상의 문제들에 관한 보고서들이 제출되었다¹⁾

한편 UNCITRAL은 뉴욕협약 기념일에 논의와 관련하여 1999년 제32차 본회의에서 중재분야의 실현가능한 장래작업을 고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서 토의자료를 준비하여 UNCITRAL 제32차 본회의²⁾에서 논의된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점들은, ① 조정절차의 일정한 측면, ② 중재합의의 서면형식의 입법요건, ③ 중재대상, ④ 주권면제, ⑤ 1개 이상 사건의 1개 중재절차로의 병합, ⑥ 중재절차상 정보의 비밀유지, ⑦ 중재절차에서 상계를 위한 신청제기, ⑧ 불완전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⑨ 중재인의 책임, ⑩ 중재판정부의 이자판정 권한, ⑪ 중재절차의 비용, ⑫ 잠정보존조치의 집행성, ⑬ 원 국가에서 취소된 판정의 집행 재량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본고에서는 위와같은 13가지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금번 UNCITRAL 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정 절차

“조정(conciliation)”이란 용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한,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참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정은 분쟁이 해결되어 종료되거나 또는 실패하여 종료되지만, 반면에 중재판정부는 자발적 해결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린다.

1) United Nations publication : Proceedings of the New York Convention Day Colloquium,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 experience and prospects", May, 1999, ISBN 92-1-133609-0.

2) UNCITRAL 제32차 본회의는 1999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 65개국 및 17개 국제기구에서 총 186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필자를 포함하여 5명이 옵저버로 참가하였다.

조정절차는 1980년 UNCITRAL 중재규칙 뿐만아니라, 다수 중재기관의 규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다수의 기타 조정규칙들의 모델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정절차들이 알선(mediation)을 포함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다.

1. 후속 사법 또는 중재절차에서 증거의 허용여부

UNCITRAL 조정규칙 제20조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를 조정절차의 본안이었던 분쟁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은 중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하거나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상대방 당사자가 분쟁의 종결을 기도하며 표명한 견해 또는 제의, ②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인용한 사실, ③ 조정인이 제시한 제안, ④ 상대방 당사자가 조정인이 제시한 해결안을 수락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는 사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UNCITRAL 중재규칙 제20조가 내포되지 않은 조정 규칙을 이용하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견해, 제의, 인용, 또는 의사의 표시등을 행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이들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에 도달하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을 위축시키며, 조정의 효용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2. 다른 반대절차에서 조정인의 역할

UNCITRAL 중재규칙 제19조는 “당사자와 조정인은 조정의 본안이었던 분쟁과 관련된 어떤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조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자문역 또는 중재인으로 취임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위와같은 절차에서 조정인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후속 중재절차에서 조정인이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실제로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침해의 주장에 근거한 이의제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어떤 관할구역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조건으로 조정인이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명백히 허용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3. 화해합의의 집행력

만약 조정으로 도달된 화해가 집행력을 갖게되고 화해의 일방당사자가 합의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소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면 조정의 매력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흔히 말해져 왔다.

어떤 관할구역에서는 조정절차에서 도달된 화해합의의 집행력을 부여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예를 들면, 서면 화해합의가 그의 집행을 위하여 중재판정으로 취급되고 그러므로써 집행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다른 가능한 해결방법은 분쟁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개시하고 중재인(이전에 조정인 일수도 있음)으로부터 합의된 조건으로 중재판정을 얻어내는 것을 명백히 허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속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서 조정기간중 제출된 증거의 용인가능성, 후속 중재절차에서 조정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및 조정절차중 이루어진 화해가 집행문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 조건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조화된 입법 모델 조항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한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Ⅲ. 중재계약

1. 중재합의의 서면형식 요건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2조 2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에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된 중재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7조 2항은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당사자간에 서명한 서류, 교환된 서신, 텔렉스, 전보 기타 그러

한 합의의 기록을 제공해 주는 전기 통신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일방당사자가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타방당사자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 주장과 항변의 교환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당사자간의 계약 속에서 어떤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조항으로 본다. 다만, 계약이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그 중재조항에 관한 언급이 당해 중재조항을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할 정도의 것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서면 중재합의와 전자상거래

UNCITRAL 모델법 제7조 2항은 합의의 기록을 제공해 주는 전기통신수단의 이용을 명백히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용어는 전자우편(E-mail)이나 전자자료교환(EDI)통신의 가장 보편적 이용을 포함할 것이다.

뉴욕협약 제2조 2항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된”이란 표현은 기타 통신수단, 특히 텔렉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동일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³⁾ 또한 이러한 확대는 1996년 UNCITRAL 모델 전자상거래법을 채택하였을 때 UNCITRAL이 취한 결정과 일치할 것이다.⁴⁾

(2) 형식요건으로서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

뉴욕협약과 UNCITRAL 모델법에서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의 표현은 상호

3) 예를들면 스위스 연방재판소는 “뉴욕협약 제2조2항은 UNCITRAL 모델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모델법의 제정자들은 실제협약의 수정없이 뉴욕협약의 법제도를 현행필요에 적응시키기를 희망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 Compagine de Navigation et Transports S.A.v.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S.A.,16 January 1995, 1st civil division of Swiss Federal Tribunal.

4) UNCITRAL 모델 전자상거래법 제정지침은 “예를들면 서류나 계약조항이 서면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이용에 법적 장애를 일으키는 현존 국제협약 및 기타 국제법규의 해석을 위한 도구로서 모델 전자상거래법이 특정한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para.6.

교환 서면의 의미로 지나치게 문리적 해석에 치우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수락은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순수한 구두합의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뉴욕협약상 중대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며 적어도 UNCITRAL 모델법의 매우 확대적이고 목적론적인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즉 서면 구매주문(purchase order) 또는 서면 판매 확인(sales confirmation)의 묵시 또는 구두수락, 서면 일반거래조건에 따른 구두체결계약, 중개인각서(broker's note), 선하증권 및 서명하지 않은 제 3 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기타 증서나 계약 등의 경우이다.

현존 판례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판매 또는 구매 확인에 있어서 중재조항은 오직 ① 확인이 당사자들에 의해 서명되거나, ② 서명되거나 되지 않은 부분이 반송되거나, ③ 가능한 한 확인받은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보낸 당사자에게 다른 서면 통신수단으로 뒤이어 확인이 수락되는 경우에만 뉴욕협약 제 2 조 2 항의 서면형식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주석 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들은 더 이상 국제 무역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중재합의의 형식에 관하여 모든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UNCITRAL 모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구두중재합의 조차도 합법화할 것이다. 그러나 구두합의의 허용이 불확실성과 소송을 유도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다.

2. 중재대상 (Arbitrability)

여러 국가들이 예를 들면 “경제적 이익에 연루된 신청”을 포함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화해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의 전통적 방식을 넘어서는 일반적 규정을 중재법에 포함하고 있다. 분쟁들이 중재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의들간의 차이들이 실제문제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문제에 접근방법의 하나는 비중재대상 문제들의 목록에 전세계적인 의견일치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비중재대상으로 고려되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문제들로 제한하는 통일규정에 합의하고 그 뒤 국가들로 하여금 그 국가에 의해 비중재대상으로 간

주된 다른 문제들을 그 후 즉시 목록에 올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의 여부가 고찰될 수 있다.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중재법 제5조⁵⁾에서 이용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흠이 있는 정보의 접근은 이러한 제한들에 대한 정보에 확실성과 용이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IV. 중재절차

1.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민간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때에 국가는 주권면제를 근거로 참가를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또는 민간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그 단계에 주권면제의 항변에 부딪칠 수 있다.

(1) 중재절차에서 주권면제

(a) 국제법

많은 국가들의 국내입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제협정들의 검토는 국가가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또는 국제상사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국가의 합의는 그의 주권면제의 포기를 내포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국제 및 지역협정들은 국가들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럽협약(제네바, 1961)은 협약이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공법의 법인으로서 간주된 법인들은 유효한 중재합의를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항).

5) UNCITRAL 모델국제상사중재법 제5조는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도 이 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 국내법

어떤 국가들에서는 만약 중재합의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그의 중재당사자 능력이나 중재합의에 포함된 분쟁의 중재대상을 다투기 위하여 그 자신의 법률에 의존할 수 없다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2) 중재판정의 집행에서 주권면제

(a) 국제법

구속력 있는 외국중재판정으로서 인정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는 뉴욕협약에 관하여는 어떤 주석 자들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국가는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야 하며 면제를 항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약 본문이 지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 1965)에서, 협약에 의거하여 내린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고 집행할 국가 측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가 특별하게 유보되어 있다(제54조 1항, 제55조).

(b) 국내법

오직 몇 개 국가들만이 중재판정에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국가 법률에서는 외국이 중재합의 당사자인 경우, 그 국가는 중재에 의거 내려진 판정의 집행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법률에 의하면, 그 국가가 승인하거나 그 재산이 상업목적에 이용 또는 예정되지 않는 한 신청인은 외국재산에 대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국가면제의 문제가 국제법위원회에서 검토중이고, 총회가 1999년에 시작하는 제54차 회의에서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조항들에 관련된 미해결의 실제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6위원회의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면⁶⁾, 사무국에게 그 작업을 청취하고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6) Resolution 53/98 by the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20 January 1999).

2. 중재판정부앞에서의 사건 병합

(Consolidation of cases before arbitral tribunals)

때때로 다른 중재합의에 근거한 2개 이상의 중재사건을 하나의 중재절차로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있다. 동일국가내에서 병합될 절차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에 2개 이상의 절차의 병합이 가능한 상황들이게만 병합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병합이 바람직할 때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상황은 국내 법원들간에 국제적 협조의 추가문제를 일으키며 현재 논의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입법노력의 목적은 사건을 병합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다른 자들은 법원의 견해로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조차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 입법이 더 나아가 법원에게 병합을 명령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병합을 강제할 권한

병합을 다루고 있는 국내법들의 검토사례에서 다만 2개 경우에 입법이 관련당사자 모두가 사건들이 병합되어야 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조차 법원에게 병합을 명령할 권한을 주고 있다. 모든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일방 당사자의 병합 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법원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절차가 병합될 예정이고 당사자들이 판정부나 절차규칙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합의에 근거한 사건병합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지원할 권한

검토된 대부분의 입법에 의하면, 병합신청은 법원에 행해진다. 어떤 관할구역에서는 병합신청이 중재판정부 또는 관련 판정부에 행해질 수 있다. 신청 받은 중재판정부들은 일치된 병합명령을 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만약 병합명령이 작성되지 않거나 관련 중재판정부들에 의해 일치하지 않는 임시 명령이

작성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병합에 관하여 결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위원회는 중재절차의 병합의 문제가 모델 입법조항을 마련할 가능성을 위하여 추가 연구를 할만한 분야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그렇다면, 사무국은 특히 국내법에 병합조항을 두고 있는 실제적 경험, 그리고 병합합의의 집행성의 입법적 승인이 요구되는가 여부, 중재판정부 및 법원이 계속할 중재판정부의 선정, 병합조건, 적용절차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중재합의의 병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가의 여부, 관련 판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여부와 같은 문제들을 조사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중재절차상 정보의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in arbitral proceeding)

Esso v. Plowman 사건⁷⁾에 대한 오스트렐리아 고등법원의 결정에서 일부 비롯된 최근 중재절차의 비밀유지 문제에 관한 중요한 국제적 논의는 절차의 비밀유지요건이 중재규칙이나 국내법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그 이전에는 만약 중재절차의 비공개가 절차규칙의 규정에 의해 보호된 경우, 또한 비밀유지가 보호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다. 그러한 근거로 중재규칙이나 국내법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UNCITRAL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문은 비공개로 할 것 그리고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판정이 공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중재법은 비공개 또는 비밀유지를 다루고 있지 않다.

비밀유지를 다루고 있는 중재규칙과 극소수의 국내법의 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접근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종류의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 규정을 공식화하는 한가지 접근방법은 타방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없이 중재에 의해 생겨난 자료들이 공개될 수 없다는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접

7) (1995) 183 Commonwealth Law Reports 10 ; Commonwealth of Australia v. Cockatoo Dockyard P/L (1995) 36 New South Wales Law Reports 662.

근방법은 예를 들면 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자료나 정보, ② 비밀유지 의무가 미치게 될 사람 및 적용될 방법, ③ 공개 및 전달의 금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예외 등을 포함하는 비밀유지 의무의 매개변수들을 다루는 더욱 상세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비밀유지를 보호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재기관 규칙들은 집합된 통계의 발표를 허용하거나 또는 공개된 정보가 개개의 당사자들이나 상황들이 확인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개의 절차들에 관한 정보조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재기관의 동의는 통상적 요건이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위원회는 비밀유지의 문제가 추가 검사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 그리고 특히 추가 보호가 모델 입법조항의 형식으로 필요하게 되는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그렇다면, 사무국은 비밀성의 보호를 위한 대안, 그리고 특히 용어에서 주어질 필요가 있는 보호의 범위, 예를 들면 비밀이 유지될 자료나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의무가 미치게 될 사람 및 적용될 방법, 공개 및 전달의 금지에 대한 허용 가능한 예외들을 조사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상계를 위한 신청제기

(Raising claims for the purpose of set-off)

중재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으로서가 아니라 상계를 위한 방어로써 그의 신청을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방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방어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상계를 위하여 의존한 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는 중재판정부가 어떤 조건하에서 상계를 위하여 원용한 다툼이 있는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가이다. 다양한 답변과 논쟁에 일어나는 문제는 만약 그 신청이 주된 신청을 포함하는 중재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상계를 위해 제기한 신청의 시비를 고려할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UNCITRAL 중재규칙은 신청이 동일계약으로부터 연유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위한 신청을 원용할 수 있다는 더욱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19조). 이 규칙은 상계신청이 주된 신청과 동일한 중재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주된 신청을 포함하는 중재합의가 상계신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상 중재판정부가 상계신청을 검토할 관할권을 가지는가 여부의 문제가 또한 일어날 것이다.

상계를 위한 신청을 검토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은 주된 신청이 연유하는 계약을 넘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미쳐야 한다는 견해가 표시되고 있다. 인용된 이유들은 절차적 효율성과 당사자들간의 분쟁제거의 바람직함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쌍방당사자들이 상인들이거나 또는 주된 신청과 상계를 위해 원용된 신청이 경제적 으로 관련된 계약에서 연유하는 때에 특별히 비중을 두기 위해 말해진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문제가 추가 연구를 할 만한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될 문제들에는 예를 들면, 상계를 위하여 제기된 신청을 다루기 위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이 중재규칙에 적절하게 위임될 수 있는가 여부 또는 적절한 입법 규칙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V. 중재인

1. 불완전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Decision by "truncated" arbitral tribunal)

때때로 특히 일방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또는 중재절차나 중재판정부의 심의에 참가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법과 중재규칙은 그 상황을 다루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중재인은 보궐중재인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보궐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규칙들은 교체될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될 규칙들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예를 들면,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중재법 제 14조 1항).⁸⁾

8)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중재법 제14조1항은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 자신이 그 임무로부터 사퇴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가 그 중재인 계약

최근에 개업변호사들간에 활발한 토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중재인 1인이 중재절차 말기에 아마도 증거가 채택되고 변론이 청취된 이후에 사임하는 때에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이 절차를 종결하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가 여부이다.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의 이러한 결정은 흔히 “불완전한 판정부” 결정으로 언급된다.

어떤 중재기관들은 불완전한 판정부가 유효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규칙들을 채택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중재협회 국제중재규칙(1991) 제11조).

이 문제는 약간의 중재에 관한 국내법에서 다루어져 왔다.

한가지 접근방법은 중재규칙에서 해결의 내용을 입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접근방법은 더욱 제한적이었다. :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불완전한 판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합의 할 자유를 법률이 인정하는 반면에, 중재인이 결정투표에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 비협력 중재인 없이 나머지 중재인들에게 그 사건들의 절차진행을 당사자들이 허용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투표 참가를 거절하는 중재인 없이 판정을 내릴 의도를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국제상사중재 관행에 있어서 중재인의 중재절차로부터 불성실한 철수의 가능한 해로운 결과를 논의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① 당사자들이 합의로 불완전한 판정부가 내린 판정의 효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정도, ② 위원회가 불완전한 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한 모델 해결방법을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 ③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법률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모델 입법 해결방법을 위원회가 마련하여야 하는가 여부와 같은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이 문제를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면, 사무국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내용을 연구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위임권한은 종료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피이유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62조에 명시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중재인의 위임권한의 종료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재인의 책임 (Liability of arbitrators)

UNCITRAL 모델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몇개 국내법을 포함하여 많은 국내법들이 중재인들의 면책을 다루고 있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면책의 범위와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모델법을 실행하고 있는 중재법에 특별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보통법 관할구역들이다.

이러한 법률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규정들은 작위나 부작위가 불성실하게 행해지거나 부정직하게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악행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와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다른 접근방법은 중재인의 자격으로 행해진 행해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과실에 대해 중재인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또는 악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를 덧붙이고 있다. 한가지 사례에서,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과정이나 중재판정의 작성에서 행해진 법률, 사실 또는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약간의 법률들은 책임제한을 추구하고 있지 않지만, 중재인의 의무의 이행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중재인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반대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로 민사법 관할구역에서 중재인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계약적 성질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리고 중재인은 위탁조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적당한 근면성을 가지지 않은 불이행, 계약적 또는 법적 기한 내에 판정의 불작성, 당사자들을 판정이 무효될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 편견, 과실, 중재절차의 비밀엄수 위반, 그리고 사기, 허위진술, 독직 및 중과실의 경우를 포함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보편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공식이 중재진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재인과 중재당사자들 모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책임의 문제가 추가 검사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재인의 책임의 추가 대우의 필요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구들이나 주석자들의 제안들은 물론 현재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VI. 중재판정

1. 중재판정부의 이자 판정 권한

(Power by the arbitral tribunal to award interest)

특히 보통법계 국가에서 중재인이 이자를 판정할 권한의 불확실성이 퍼졌으며, 많은 관할구역들이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에 이자를 판정할 권한을 다루는 특별규정들을 추가하고 있다.

이자를 끌어낼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어떤 법률들은 이것을 판정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와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될 수 있다. 다른 접근방법은 중재판정부가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급될 이자를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어떤 관할구역들은 이자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중재인에게 이자에 이자를 판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법률들이 이자가 판정될 기간을 다루고 있다. 한가지 접근방법은 이것을 판정일자로부터 개시하는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면에 다른 법률들은 소인이 발생하는 일자와 판정일자간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자가 판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또다른 접근방법은 판정일자로부터 판정의 지급일자까지 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에 관하여, 많은 법률들은 판정부가 합당한 율 또는 합당한 상업율을 결정하도록 그것을 위임하고 있다. 다른 법률들은 이자율이 판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율이 고정되어 있다. 더욱 상세한 규칙은 이자율이 지급지의 지급통화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우수 차용인에 대한 평균은행 단기 여신율 또는 해당률이 지급지에 없는 경우에는 지급통화국가내의 동일한 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결론적으로 UNCITRAL은 이자를 판정할 중재판정부의 권한 문제가 모델 입법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연구할 만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관계에 있어서, 또한 이러한 추가 연구가 ① 이자가 부과될 금액, ②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 및 이후 모두 이자가 지급될 기간, ③ 적용될 이자의 형태(단리

9)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PICC), Article 7.4.9.

또는 복리) 및 이자율, ④ 이자가 지급될 시기와 같은 기타 문제들을 포함하는 위에 언급한 법률제정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상세한 권한들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중재절차 비용(Costs of arbitral proceedings)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은 “비용”의 의미에 무엇이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다양하게 되어 있다. 어떤 법률들은 단순히 “중재비용”이라고 언급하는 일반적 서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재인 수당 및 비용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발생되고 그들의 신청이나 방어의 적절한 추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참조로 포함 할 수 있다. 다른 법률들은 포함될 항목으로 ① 중재인 및 판정부의 수당, ② 중재절차중의 숙박, 여행 및 관리지원 비용, ③ 사실적 증거 및 감정인의 증언비용, ④ 법적조언 및 대리 비용, ⑤ 중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들을 명시하는 더욱 포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모델법을 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상황에서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율로 중재비용을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을 중재판정부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 어떤 법률들은 중재인의 수당 및 비용과 기타 중재비용간에 구별하고 있으면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당 및 비용의 지급에 대해 연대 및 단독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들은 비용이 판정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중재비용을 다루는 추가판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자신의 법적 및 기타 비용과 판정부의 수당 및 비율의 균등부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결석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많은 법률들은 초과금액의 상환 명령을 포함하는 중재인의 수당 및 비용을 조정하며,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비용을 포함하는 회수 가능한 비용을 중재판정부가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일방당사자가 그 결정을 한 판정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 가능한 비용을 결정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법원의 검토 및 지원의 면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비용을 판정할 권한이 중재규칙이나 국내법에 충분

히 포함되는가 여부 또는 국제상사중재의 수행이 통일규칙의 규정으로 촉진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관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의 범위 및 비용판정 권한에 추가해서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추가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VII. 중재판정의 집행

1. 잠정보존조치의 집행성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다수의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시에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예를 들면, UNCITRAL 중재규칙 제26조 1항).¹⁰⁾

개업변호사들에 의해 자주 논의된 문제는 중재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 및 다른 국가에서 모두 이러한 조치의 집행성이다. 집행성의 필요는 한편, 완강히 반항하는 당사자측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절차의 결과를 크게 쓸모 없게 하는 경우(예를 들면, 재산의 낭비 또는 관할구역으로부터 이전) 최종판정이 거의 가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논쟁에 의해 통상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집행 가능한 잠정조치의 신청을 법원보다 오히려 중재판정부에 직접할 수 있다면 판정부는 그 사건에 정통해 있고 통상적으로 그 대상문제를 더욱 기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더욱 유효하게 이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

때때로 중재판정부는 잠정보존조치를 잠정판정의 형식으로 내리고 있다. 이것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또한 이러한 잠정조치를 포함하는가 여부의 문제를 일으킨다. 약간의 국가에서 판례법에 의해 확인된 유력한 견

10) UNCITRAL 중재규칙 제26조1항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부패성이 있는 물품의 매각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물품의 보관을 명하는 등 분쟁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의 대상에 관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는 협약이 잠정판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중재법 제17조에서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잠정보존조치를 명령할 권한과 또한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모델법은 집행문제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잠정조치의 집행성에 관하여 입법부에 의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입법은 이 점에 관하여 언급이 없다. 중재판정부에게 잠정보존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모델법 제17조를 혼합하고 있는 약간의 입법들을 포함하는 다른 입법에서는 이러한 잠정조치의 집행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가지 입법의 경우 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시에 유사한 잠정조치의 신청이 이미 법원에 행해지지 않는한 판정부가 명령한 잠정조치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조치의 법원이 명령한 집행에 관한 관심사의 하나는 권리남용이 있는 경우에 책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한 국내법에서는 예를 들면,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조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집행을 얻어낸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타방당사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보상신청은 게류중인 중재절차에 제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잠정보존조치의 집행성 문제가 사무국에서 추가 연구되어야 하는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무국은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서 관련 관행 및 법원관행을 조사할 것과, 그리고 통일 입법조항의 바람직함과 가능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최초의 임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2. 원 국가에서 취소된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재량

(Discretion to enforce an award that has been set aside in the State of origin)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신청인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원국가)의 법원이나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국가(집행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판정이 원국가의 관할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원국가에서의 판정의 집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때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판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집행국가의 법원이 직면하는 문제는 원국가에서 판정이 취소된 사실을 무시하면서 법원에게 판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사정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은 판정의 집행이 거절될 수 있는 근거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하나는 “판정이 아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이다(제5조 1항 e호).

개업번호사들간 및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것은 협약 제5조 1항 e호에 근거한 집행의 거절이 어느 정도로 재량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집행국가의 법원이 원판정이 취소된 근거를 참작할 권한을 가지는가 여부, 또는 집행의 신청이 반드시 거절되어야 하는가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취소된 판정의 집행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럽협약(제네바, 1961)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9조 1항에 의하면, 판정이 원국가의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 만약 취소이유가 약화된 것들에 속하는 경우에만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집행거절의 근거를 구성하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뉴욕협약 제5조 1항 a호 내지 d호¹¹⁾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유럽협약에 의하면 판정이 유럽협약 제9조 1항에 것들과 다른 근거로 원국가에서 취소된 경우 집행국가의 법원은 판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UNCITRAL 모델법 제36조 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뉴욕협약 제5조 1항의 규정과 동일하다. 특히 제36

11) 뉴욕협약 제5조1항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a)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b)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c) 판정이 중재부탁조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d)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간의 합의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여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 1항 5호는 “판정이 아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원이나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거절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판례법에 비추어서, 원칙 문제로서 원국가에서의 판정의 취소가 다른 국가에서의 집행에 절대적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더욱 일반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 이론에 의하면, 취소된 판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관할 구역에서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의 표현으로서 판정의 존재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원에 의한 배타적 결정을 위한 문제로 가정될 수 없다는 근거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비판은 법률의 충돌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공통되는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만약 법정이 적절하게 관할이 성립된 경우, 한 문제가 다른 법정의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의 법률에 따라서 유효한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UNCITRAL은 원국가의 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이 다른 국가에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을 맡음으로서 국제상사중재가 촉진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VIII. 맺음말

금번 UNCITRAL 제32차 본회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상사중재 실무상 제기된 13가지 문제점들에 관하여 각국 대표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한편 사무국은 이와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각국으로 하여금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협약 또는 모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13가지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점들의 중요도에 관한 UNCITRAL 본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정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서 나온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진술 당사자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의 허용여부 문제,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도달된 화해합의의 집행보장 문제 등은 조정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다수국가가 동의하였다.

둘째, 중재합의의 서면형식 요건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우편(E-mail)이나 전자자료교환(EDI)통신에 의한 중재합의의 경우 또는 국제무역관행상 서면 구매주문이나 서면 판매확인에 대한 묵시 또는 구두수락에 의한 중재합의의 경우 그 효력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 바, 이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문제로서 다수국가가 동의하였다.

셋째, 중재대상, 주권면제, 중재판정부앞에서의 사건병합, 중재절차상 정보의 비밀유지, 상계를 위한 신청제기, 중재인의 책임, 중재판정부의 이자 판정권한, 중재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는 각국의 관련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수국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불완전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문제 즉 중재인들 가운데 1인이 사임한 경우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의 의한 판정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우선적 논의문제는 아니지만 논의의 가치가 있다는데 다수국가가 동의하였다.

넷째, 잠정보존조치의 집행성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일방당사자의 요청시 집행력있는 잠정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 바, 이를 중재의 효율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데 다수국가들이 동의하였다.

다섯째, 원 국가에서 취소된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재량에 관하여는 중재판정의 내려진 원 국가의 관할법원에 의해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 타국가 법원에서의 판정 집행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이를 중재판정의 집행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다수국가들이 동의하였다.

앞으로 UNCITRAL은 위와같은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들에 관한 통일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찰하되, 가능한한 추가작업이 모델법조항이나 협약과 같은 법률규정의 형태로 할 것인가 또는 모델계약규칙과 같은 비법률규정의 형태로 할 것인가를 적시하면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사무국으로 하여금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UNCITRAL이나 실무작업반의 고찰을 위해 최초의 시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ertain Issues in International Commerce Arbitration Practice

-With respect to Discussions at UNCITRAL Thirty-second Session-

Kang Bin Lee

The UNCITRAL, during its thirty-two session in 1999 discussed certain issues and problems identifi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ractice. The issues discussed include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the legislative requirement of a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 arbitrability ; sovereign immunity ; consolidation of more than one case into one arbitral proceedings ;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in arbitral proceedings ; raising claims in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urpose of set-off ; decisions by "truncated" arbitral tribunals ; liability of arbitrators ; power by the arbitral tribunal to award interest ; costs of arbitral proceedings ;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 and discretion to enforce an award that has been set aside in the state of origin.

Among those issues discussed, most of States agreed that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the legislative requirement of a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 and discretion to enforce an award that has been set aside in the State of origin should have priority over other issues.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rther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such as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or a treaty) or a non-legislative text (such as a model contractual rule).

참 고 문 헌

-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
박상조·주기종·윤종진, 국제상사중재법론, 한울출판사, 1997.
이순우, 상사중재론, 법경사, 1998.
정기인, 상사중재론, 무역경영사, 1992
법무부, 국제상사중재제도 해설, 1992.
UNC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_____, Arbitration Rules, 1980.
_____,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_____, Doc. A/CN. 9/460, 6 April 1999.